

DK25-9312029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의 촉진 및
施設周邊地域의 지원에 관한法律

1993. 12

科學技術處

빈 면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의 촉진 및 施設周邊地域의 지원에 관한 法律

1. 提案理由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의 建設에 필요한 敷地의 확보와 同施設周邊地域의 지원에 관한 法的 根據를 마련함으로써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同施設周邊地域住民의 所得増大 및 福祉増進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科學技術處長官은 住民·關係專門家 및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地區를 지정·告示하며, 住民의 意見を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住民 및 關係專門家로 구성된 地域協議會

를 두도록 함(第3條·第4條)

나.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地區의 지정·告示가 있을 때에는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都市地域으로 決定·告示된 것으로, 土地收用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는 것으로 각각 보도록 함(第6條 및 第11條).

다. 開發事業의 事業者가 開發事業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第9條).

라.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者는 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生活基盤을 상실하여 移住하게 되는 者에 대하여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 移住對策을 수립·施行하도록 함(第15條).

마. 施設周邊地域支援事業은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長期計劃 및 年間計劃을 수립한 후 이

를 施行하도록 함(第18條).

바. 지원사업은 施設周邊地域의 所得増大와 福祉増進을 위한 公共施設事業·所得増大事業 및 育英事業으로 하고, 그중 公共施設事業은 市長·郡守·區廳長이, 所得増大事業 및 育英事業은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者가 각각 施行하도록 하며, 지원사업의 施行期間은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의 建設期間 및 運營期間으로 함(第21條 및 第22條).

사.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의 실시로 인하여 生活基盤을 잃은 者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施行하도록 하고, 移住者와 施設周邊地域住民을 우선적으로 雇傭하도록 함(第26條 및 第27條).

빈 면

法律 第 號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의 촉진 및 施設周邊地域의 지원에 관한 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地區의 지정 및 開發과 同施設周邊地域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의 敷地確保를 쉽게 하고, 그 建設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아울러 同施設周邊地域住民의 所得增大와 福祉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地區”라 함은 原子力法 第 85條의 規定에 의한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에 필요한 放射性廢棄物永久處分施設, 使用後核燃料中間 貯藏施設, 關聯研究·試驗施設 및 附帶施設이 同一 地域안에 設置되는 地域으로서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地域(이하 “施設地區”라 한다)을 말한다.

2.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地區開發事業”이라 함은 施設地區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다음 各目的事業(이하 “開發事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用地造成事業

나. 港灣, 道路, 上·下水道, 通信, 에너지공급 등
基盤施設事業

다. 기타 가目 및 나目的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3. “施設周邊地域”이라 함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이 소재하거나 소재하게 될 邑·面 또는 洞을 말한다.

4. “施設周邊地域支援事業”이라 함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建設 및 운영과 관련하여 施設周邊地域住民의 所得増大와 福祉増進을 위하여 施行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増大事業.

公共施設事業 및 育英事業(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을 말한다.

5.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者”라 함은 原子力法 第85條의 規定에 의하여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을 政府로부터 委託받아 수행하는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를 말한다.

第3條(施設地區의 지정·告示등) ①施設地區는 科學技術處長官이 지정한다.

②科學技術處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地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施設地區의 開發에 관한 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關할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原子力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지정된 내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施設地區의 位置 및 면적
2. 事業者
3. 事業施行方法
4. 第2條第1號의 규정에 의한 施設의 概要
5. 土地利用計劃 및 基盤施設計劃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④科學技術處長官은 施設地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官報에 告示하고 關係書類의 寫本을 管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第2號의 사항은 施設地區를 지정한 후에 告示·송부할 수 있다.

1. 事業者
2. 收用·사용할 土地·建物 기타 물건이나 權利가 있는 경우에는 그 細目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書類를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一般人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4條(住民의 意見聽取등) ①科學技術處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地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開發計劃의 主要내용을 日刊新聞등에 公告하고 이를 住民에게 1月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되거나 열람에 제공된 開發計劃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者는 科學技術處長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科學技術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計劃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者에게 그 의견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科學技術處長官은 住民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住民 및 關係專門家등으로 구성된 地域協議會를 두어야 한다. 그 組織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科學技術處長官은 施設地區를 지정하기 전에 開發計劃에 대하여 公聽會를 열어 住民 및 관계專門家등으로부터 그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第5條(施設地區指定의 효력) ①施設地區로 지정·告示된 地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土地의 形質變更
2. 建築物의 建築
3. 工作物의 設置 또는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採取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②第3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地區의 지정·告示 당시 이미 關係法令에 의하여 第1項各號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許可·認可·승인등을 얻은 者(關係法令에 의하여 許可·認可·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土地의 形質變更, 建築物의 建築등에 착

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許可·認可·승인등을 얻은 者는 施設地區指定의 告示日부터 30日 이내에 그 사실을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第6條(國土利用計劃에 관한 特例) 科學技術處長官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地區를 지정·告示한 때에는 당해 地域은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都市地域으로 決定·告示된 것으로 본다.

第7條(開發事業의 施行者) 開發事業은 事業者가 施行한다.

第8條(開發事業實施計劃의 승인·告示등) ①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事業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科學技術處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市·道知事の 의견을 듣고 商工資源部長官 기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科學技術處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官報에 告示하고, 關係書類의 寫本을 管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書類의 寫本을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一般人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9條(다른 法令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등) ①事業者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지정·認可·승인·인

정·決定·解除 또는 免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都市計画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서의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の 지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2. 水道法 第12條 및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 및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3.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4.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
5.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6.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7. 道路法 第14條 내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路線의 인정,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區域의 決定,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の 許可, 同法 第50條 및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등의 許可
8.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域의 解除 및 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農地の 轉用許可
9. 農地の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の 許可
10.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同法 第62條 및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11.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許可 및 同法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12.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13. 酪農振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酪農地帶의 解除
14.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15. 測量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使用의 승인
16. 埋葬및墓地等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許可
17. 농촌근대화촉진법 第158條의4의 規定에 의한 農地改良施設의 目的외 사용의 승인
18.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同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②科學技術處長官이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條(開發事業등의 委託施行) ①事業者는 開發事業 중 港灣·用水施設·道路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建設과 公有水面의 埋立에 관한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施行할 수 있다.

②事業者는 開發事業을 위한 用地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하여 施行할 수 있다.

第11條(土地의 收用등) ①事業者는 開發事業에 필요한 土地, 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물건과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 漁業權, 물의 사용

에 관한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施設地區의 지정·告示가 있는 때(第3條第4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收用·사용할 土地등의 細目を 施設地區가 지정된 후에 告示한 경우에는 그 告示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施設地區의 土地등에 대한 裁決은 中央土地收用委員會가 管掌하며, 裁決의 申請은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開發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期間내에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

第12條(土地에의 出入등) ①科學技術處長官이 施設地

區를 지정하거나 事業者가 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흙·돌 기타의 障礙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他人의 土地에의 出入등에 관하여는 都市計画法 第5條 및 同法 第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條(公共施設의 귀속) ①事業者가 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公共施設을 設置하거나 종래의 公共施設에 대체되는 公共施設을 設置한 경우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에 불구하고 당해 開發事業의 竣工認可가 公告된 때에는 종래의 公共施設은 事業者에게 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設置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관리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된다.

②科學技術處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實施計劃을 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管理廳 및 地方自治團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될 公共施設에 관하여 事業者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開發事業의 竣工認可전에 그 종류와 細目을 해당 管理廳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登記에 있어서는 實施計劃承認書와 開發事業竣工認可書로써 不動產登記法에 의한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に 갈음할 수 있다.

⑤第 1 項 내지 第 4 項에 規定된 公共施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國·公有地の 처분제한등) ①施設地區 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당해 開發事業에 필요한 土地는 開發事業의 目的의로 賣却·交換·讓與·私權設定 또는 現物出資를 할 수 없다.

②施設地區 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財産은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에 불구하고 事業者에게 隨意契約으로 貸付 또는 賣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財産의 賣却에 관하여는 科學技術處長官이 미리 해당 管理廳 및 地方自治團體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에게 貸付 또는 賣却하고자 하는 國有財産중 管理廳이 불명한 財産에 대하여는 다른 法令에 불구하고 財務部長官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第15條(移住對策) 事業者는 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生活基盤을 잃고 移住하게 되는 者에 대하여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移住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16條(開發事業의 竣工認可) ①事業者가 開發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處長官의 竣工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科學技術處長官은 竣工認可를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研究機關 기타 專門機關의 長에게 竣工認可에 필요한 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

③科學技術處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고 事業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承認으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당해 사업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전에는 開發事業으로 造成된 用地나 設置된 施設物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處長官의 使用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條(施設地區의 隣近地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準

用) 施設地區의 隣近地域에서 開發事業에 직접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施行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第5條, 第7條 내지 第16條, 第29條 내지 第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第5條第1項에서의 “施設地區로 지정·告示된 地域”은 이를 “施設地區의 隣近地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實施計劃이 승인·告示된 地域”으로 보며, 第11條第2項에서의 “施設地區의 지정·告示가 있는 때”는 이를 “施設地區의 隣近地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實施計劃의 승인·告示가 있는 때”로 본다.

1. 港灣·道路·用水施設·下水處理施設·廢棄物處理施設 또는 通信施設事業
2. 電氣·가스 또는 油類의 供給施設事業
3. 施設地區의 造成을 위하여 그 施設地區에 인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4. 施設地區의 埋立을 위한 준설사업

第18條(支援事業計劃) ①科學技術處長官은 施設周邊地域住民과 管轄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長期計劃(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商工資源部長官 기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확정한다.

②事業者는 長期計劃에 따라 매년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다음 年度의 支援事業計劃(이하 “年間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科學技術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年間計劃을 商工資源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확정한다.

④長期計劃 및 年間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公聽會를 열어 施設周邊地域住民 및 관계專門家の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第19條(支援事業審議地域委員會) ①事業者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支援事業審議地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委員會는 施設周邊地域住民등으로 구성하며, 그 組織·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지원사업의 財源) 지원사업에 필요한 財源은 原子力法 第8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21條(지원사업의 施行者) 지원사업중 公共施設事業은 施設周邊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施行하며, 所得増大事業 및 育英事業은 事業者가 施行한다.

第22條(지원사업의 施行期間) ①지원사업의 施行期間은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중 放射性廢棄物永久處分施設 및 使用後核燃料中間貯藏施設의 建設期間 및 運營期間으로 한다. 다만, 科學技術處長官이 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建設期間전에 지원사업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期間 및 運營期間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支援金の 支援) ①科學技術處長官은 지원사업을 위하여 基金에서 지원되는 資金(이하 “支援金”이라 한다)중 所得増大事業 및 育英事業에 관한

것은 事業者에게 지원하고, 公共施設事業에 관한
것은 事業者를 통하여 施設周邊地域을 관할하는 市
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②支援金の 상한금액・지원방법・支援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支援金の 사용) ①支援金は 施設周邊地域에 사
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施行이나 地域
의 균형있는 발전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周邊地域과 인접하고 있는 邑・面・洞
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支援金중 施設周邊地域에 사용하는 지원비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支援金の 早期使用등) 事業者가 지원사업의 효
율적인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支援金を 앞당겨 사
용하거나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第26條(지원사업의 優先施行) 支援事業施行者は 開發

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生活基盤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施行하여야 한다.

第27條(地域住民의 優先雇傭) 事業者는 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生活基盤을 잃고 移住하게 되는 者, 移住한 者 또는 施設周邊地域住民을 우선적으로 雇傭하여야 한다.

第28條(보고 및 檢査) ①科學技術處長官은 지원사업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의 施行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9條(關係書類등의 열람) 事業者는 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書類의 열람 또는 複寫를 하거

나 그 謄本 또는 寫本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第30條(罰則)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條同項各號의 행위를 한 者は 6月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2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者は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事業者
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資料를 제출한 事業者
3.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處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事業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事業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 則

이 法은 1994年 6月 1일부터 施行한다.